

1회추경예산편성 질의에 따른 서면답변서

□ 질의내용

- 일 시 : 2006. 8. 31
- 장 소 : 의회 산업건설위원회
- 질의내용
 - 산림환경과 위천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의
요율 재조정

□ 답변내용

- 예산편성경위
 - 당초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원(도1억5천, 군1억5천)을
요구하였으나 도비1억5천만원과 군비5천만원으로 2억원을
편성요구하게 되었음
 -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은 당소 위천면 관내 4개소에
소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게 됨
(예산편성지침 건설부분요율 5천만원미만 1.08%)
- 조치계획
 -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부서와 협의후 전체금액을
적용하여 부대비 요율을 0.72%로 조정

산림환경과장 이 태 우(인)



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귀하